



학생자치실현과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선도를 넘어 학생자치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희망이 있는 교육이야기” 우리교육에 희망을 주는 미담을 찾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오운재단은 건강하고 신명나는 학교현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훈훈한 이야기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제보전화 : 오운문화재단 - 살맛나는 세상 - T. 080-311-3233 F. 02-311-1249,
참교육학부모회 출판국 02-708-58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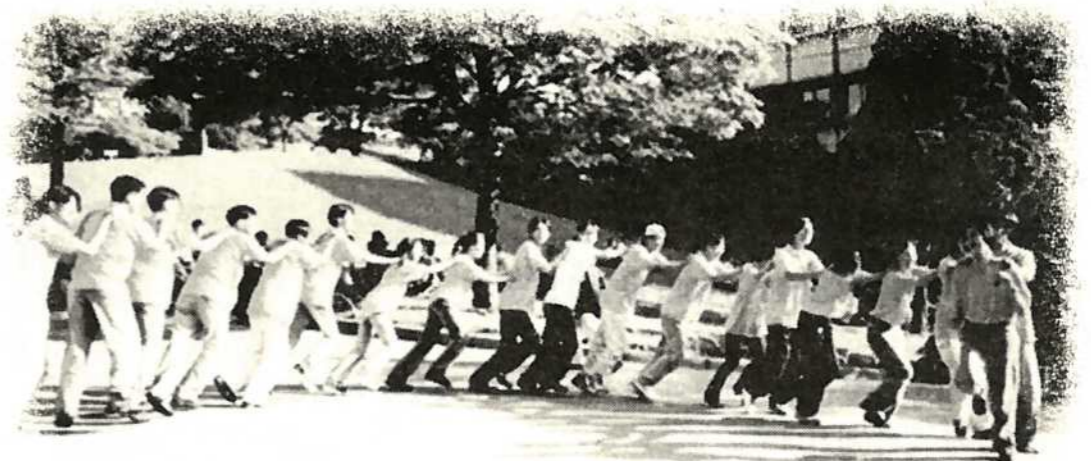
■ 일시: 2000년 5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7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역청소년단체연합

후원: 한길리서치 협찬: 중학생시사문화지 <포브틴>



학생자치실현과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선도를 넘어 학생자치로”

■ 일시: 2000년 5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7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역청소년단체연합

후원: 한길리서치

협찬: 중학생시사문화지 <포브틴>

토론회 순서

글 목차

1부 :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의 실태와 현황

- 가. 학생 생활규정의 흐름과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끼치는 영향
강 순원(한신대학교 교수)
- 나. 학생이 바라본 학생생활규정의 실태
청소년단체연합(사단법인 추진위) 김필섭(대영고 2학년)
- 다. 학생생활규정의 실태와 제 개정 방향(설문조사)
김정욱(개원중 교사, 전교조 학생생활국 부국장)

2부 : 민주적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새롭게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 나. 법적인 측면에서 본 학생의 학교참여권리
신현직
- 다.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운동 사례
이우경 : 목천중 교사
- 라. 학생참여로 이루어진 학교자치 사례
풍문여고 학생회, 전(前) 장승중학교 학생회장 김석영

3부 : 종합토론

| | |
|---------------------------------|----|
| 머리말 | 4 |
| 학생 생활규정의 흐름과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끼치는 영향 | 6 |
| ① 학생생활규정의 실태와 제 개정 방향(설문조사) | 16 |
| 법적인 측면에서 본 학생의 학교참여권리 | 32 |
|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운동 사례 | 40 |
| 첨부자료 목천중학교 학교선도규정 | 48 |
| 목천중학교 복장규정 | 55 |
| 목천중학교 학생 자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 56 |



“선도를 넘어 학생 자치로” 열며

외환위기가 빚은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는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분단, 전쟁과 반 이상이 지배하던 한 세기를 접으면서 인권과 자유 정의와 평화의 가치 위에 군림하던 경제 제일주의의 가치를 한층 높이 들고 새로운 천 년, 21세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세기의 업보를 그대로 안은 채, 새로운 세기의 백 오십 일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기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세기 말 한국에서 50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는 역사 발전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보여준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우리가 넘고 무너뜨려야 할 높고 두터운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일천하고 미 조직된 시민운동의 힘이 보여준 낙천 낙선 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작은 희망의 불씨가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었던 점은 다행입니다.

교육은 도구가 아닙니다. 선발기제로서의 대학 입학시험과 학력주의 교육관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진보에 암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육을 도구로 바라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차별화 하는 천박한 교육철학이 교육의 발전과 사회 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동의 전면적 발달 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교육적 추적과 분석이 결여된 교육방식과 평가방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 개개인이 변화하는 경로를 읽어주고 대응하지 못하는 생활교육, 무엇보다 아동을 교육과 생활과 주체로 볼 수 있는 성인들의 능력과 자세 등이 오늘날 교육 위기의 핵심입니다.

교육 제도와 정책은 한국 사회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 철학과 사상은 아동에 대한 기초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과로서가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성숙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살아 숨쉬는 철학과 사상이 절실합니다.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아동의 성장과 성숙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 철학과 사상은 외래 수입품이 아니고, 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 속에 살아 있는 것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도 교육 현장의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토론의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육은 교육 주체인 아동을 대상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구체적 현실에 귀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들과 마주앉아서 학습과 생활을 나누고 고민해야 할 교사와 학부모들도 이러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교육 행정의 담당자들은 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활 문화적 위기마저 심화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타방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항변할 힘조차 없는 아동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교육에 관심 있는 성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들어주고 고칠 것은 함께 고치고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민주적 토론과 대화의 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 중 가장 핵심적 지위에 있는 아동(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가 끈기를 가지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교육을 살리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열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아동의 인권 신장과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을 가로막는 학교 제도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실천 운동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규제의 철폐와 제도의 개선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체들의 토론의 과정에서 21세기 새로운 아동관과 학생관, 교육관을 정립하고 아동과 학생이 교육과 생활의 주체로 서고, 교사와 학부모가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사회와 교육 당국이 이를 지원하는 가운데 교육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와 사단법인 서울지역청소년단체연합,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생들, 전교조 학생생활국합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신장과 자치활성화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 간담회' 수차례 만남을 통하여 토론되어 준비되었습니다. 각계의 아동(학생) 인권과 자치에 애정과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토론하였던 내용을 좀 더 풍부히 하고 문제 의식을 높이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단위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포함한 주체들의 교육적 관계의 회복과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참교육 학부모회의 백진영님, 청소년 단체 연합의 김한영님, 전교조 학생생활국의 김정욱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0년 5월 27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현원일

학생 생활규정의 흐름과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강 순원(한신대학교 교수)

1.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교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영문도 모르고 교문에서 머리 길다고 이름 적히고 치마 길이 길다고 옆에 서있었으며, 명찰 안달았다고 머리를 쥐어 박히곤 했다. 아마도 학교 규칙에 따라 주로 체육선생님과 교련 선생님이 학생 규율을 책임지는 악역을 맡았던 것 같다. 다행히 중학교 때에는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수반을 운영한 학교의 지혜(?) 덕분에 말썽부리는 아이들과 한 반에 있지 않는 행운을 누렸고 또한 고등학교 때에도 지역의 명문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나름대로의 수준 있는 아이들과만 생활했기 때문에 심한 규제를 받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해 다른 학교에 진학한 동생의 경우는 자신도 못한 말썽을 부리기도 했지만 거의 매일 이름 적히고 얻어맞고 벌서고 욕먹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불성실한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선생님을 골탕먹이고 가방에 온갖 것을 숨겨 다니다 들키고 하여 선생님과 적대관계에 놓임으로써 선생님 욕을 매일 입에 달고 다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그 때는 전반적으로 중등학교 진학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 마스크의 효력도 상대적으로 세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는 상당히 높았다. 어쩌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체벌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선생님께 비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권위주의적 구도를 전제로 학생 지도를 할 경우 학생이나 교사 양편 모두로부터 불만족스런 결과를 낳는다. 교사, 학생 양편 모두 권리의 의식의 무장으로 상당히 민주화되어 있고 학교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민주화 정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다. 학부모도 아주 당당해졌다. 무엇보다 가족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소자화(小子化)현상에 따른 공동체성이 엄청나게 약

화되었다. 즉 학교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반면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소비의 증대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정보화사회의 빠른 진입과 지구촌화로 인한 외래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자기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대화되면서 서구적 가치 체계로의 외형적 흡수에 따라 기존의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통제논리가 신세대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수준만큼은 학교도 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학생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의 신분이란 학교에서 특히 교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교과를 지도받는 학습자로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과도적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은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잘 짜여진 교과지도를 준비된 성인인 교사로부터 흔쾌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수동성의 상대적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학생은 국가로부터 국민교육의 위임을 받은 교사가 국민들이 합의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잘 교육시킨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는 교육적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제반의 권리가 학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미래를 위해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학생의 자유권은 엄격한 훈육을 위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성년자인 학생은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상당부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체의 교육적 선택권을 포기당한 채 물개성적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에 적응할 것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박제당한 채 청소년기를 좌절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다. 학생들이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는 건강한 그들의 생활공간이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는 곳도 못된다. 입시준비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은 오히려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통해 더 잘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친구도 학교보다는 교회나 다른 사회적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대들에게 있어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선발의 압력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한 비주체적 존재, 즉 개성을 누르고 집단적 기준에 순응해야 하는 소극적 존재,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당하는 자기 부정형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용환, 1998)

3.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앙통제적 교육과정과 입시라는 구조적 규제 속에 묶여서 재미없는 학교 공간 안에서 청소년기의 거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학생들에게 '피끓는 청춘'이라는 낭만적 어구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신장이 학교나 일반 사회의 중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의견도 경청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학생들의 대의기관인 학생회를 설치해 놓고는 있지만, 어른들은 학생회 간부들 역시도 모두 다 어리고 철없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미성년자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각종 학생규정들이 보호를 넘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교육법 규정과 학생선도규정이다.

일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은 근태, 결석, 용의복장, 교내생활, 교외생활, 질서생활, 행락질서 등으로 구성된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적용되는 근거가 교육법이고 교육법의 누계가 10점 혹은 각급 학교가 정하는 일정 점수가 넘는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징계의 수위를 정하게 된다. 헌정부 들어와 학생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징계 수단으로 벌점제가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벌점표가 학교별로 작성되어 학생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벌제에 익숙한 학교문화안에서 '한 대 맞고 말래 아니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벌점 받을래?' 라고 하는 이상한 기류가 학교에 흐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 정도되면 상벌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규율부가 없어지고 선도부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여전히 비슷하다. 특히 선도부 학생 자신도 동료 학생에게 5점 미만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부학생 스스로가 학교내의 징계를 둘러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징계의 대상인 학생과실의 내용이 사실 학생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규

제하는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한 학교의 경우 선도규정 세부항목을 보면, 예절, 준법, 수업, 근태, 흡연 및 마약, 폭력, 퇴폐, 금품, 집단행위 등에 관한 상세한 금지규정이다. 아이들이 분개하고 있는 벌점 적용의 일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듯이 용의단정-예를 들어 머리 길이 제한이나 치마길이 혹은 머리핀의 색깔 유무 등-의 의미도 이것이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경우 혹은 불법집회나 씨클에 가입한 경우를 선도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서 이것은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일종의 징계의 한 방법인 선도유형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이수 그리고 선도처분으로 되어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선도위원회가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학생징계가 있을 시 소집해서 심의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봉사가 약자를 위한 자발적 사회참여의 행위로 장려되기 보다는 별로 인한 규제적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가 전원 교사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일정한 편견이 징계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학생의 신변에 관한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학생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재론 혹은 재심의 여지없이 결과가 학교와 가정에 통지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 선도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18조(주1)와 동시행령 77조(아마도 잘못 기술된 것 같음) 또는 30조, 31조(주2) 에도 어긋나 있다.

4.

학생들의 가치나 태도는 수업시간의 교과교육을 통해서 교육되기보다는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무엇보다 주지주의적 교과 내용과 달리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감수성은 기초

(주1)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2) 동시행령 제30조와 31조는 제3장 제1조 학생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 단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습득해야 한다. 정의, 타인에의 포용, 자기 존중, 민주주의적 감수성, 박애, 인권, 국가 사랑, 효도, 평화 등등의 보편적 사회 지표는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기초교육 수준에서 범교과적으로 특히 참여적 활동을 통해 형성해 나갈 것을 UN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구촌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간성 상실의 시점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이 점이 공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이다.

아동기(청소년기)의 그 누구도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합당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국제선언이 1989년에 선포된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에 의해 어린이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어린이, 청소년 국제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문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의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등을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에 준해 모든 활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8조와 29조 교육관련 조항에서는 특히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학교규율이나 규정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고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교육감은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1998년 8월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는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 중에 '참여'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독려한다. 그리고 남녀 동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남녀차별을 없애는 조치들을 취한다.
11.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참여와 통합을 강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과정과 시민정신, 시민적 책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촉진한다.
12. 청소년활동과 프로그램의 형성, 실행, 사후관리, 감시, 평가에 청소년들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청소년들이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 입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청소년 대표들을 통해 촉진한다.
13. 직장에서의 청소년의 참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14.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와 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있어서 소외되고, 박해받기 쉽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오거나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15. 청소년들에게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지도자 역할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16. 중요한 청소년 참여 형태로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장려한다.

'교육'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참여의 형태로서 다음 두가지 조항이 있다.

38. 공식, 비공식교육, 문맹퇴치, 청소년훈련, 평생교육 등 모든 종류의 교육을 촉진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촉진한다.
41.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한다.
51. 학생조직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학생조직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조직들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수용되어 특히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더 이상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참여를 통한 주체적 민주시민이라는 인식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기존의 청소년헌장이 새롭게 개정되어 1998년 10월 문화관광부장관은 '새로운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청소년 현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자신과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게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 10. 25

각급 학교에서도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학생 참여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학생은 교육적 통제의 대상이고 이런 민주적인 학교 풍토를 교육의 질 저하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식기반사회의 창의력있는 인간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조짐이기도 하다.

5.

오늘날 전 세계는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경없는 지구촌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위 경쟁력있는 교육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식의 공교육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향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학부모의 무

분별한 이기주의와 교사의 무능력 그리고 학생문화의 해체성에 전가한다. 도대체 경쟁력있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직업이 분화되어 20%만 일해도 충분한 생산력으로 나머지 80%가 살 수 있다는데 놀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말 학교는 없어질 것인가? 대학은 분명 과잉경쟁으로 상당수 도태하겠지만 초중등학교도 그럴까? 아무리 인터넷이 기존의 학교교육적 기능을 대치한다 하더라도 가정학교(home schooling) 같은 대안교육은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유전자조작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 기존의 가족단위에 분명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이의 여파로 학교교육의 틀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수록 인간의 본질적 태도와 가치를 가름하는 교육적 노력은 학교 안팎에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존의 지식전달적 교육은 쓸모없다는 인식은 분명 교육에 대한 기존 발상을 변하게 만든다. 그것이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창의력있는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일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력에 의한 경제의 크기에 좌우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인식의 체고 없이는 그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 권위주의, 관료주의, 연고주의, 부패 등 기존의 정태적 틀로는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산을 위한 기초로서 창의력있는 아동 교육이 참여와 존중의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학생생활규정이나 선도규정 등이 학생들의 일상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노력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학교는 사회의 일부로서 연령적 단계에 따른 모든 삶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학생을 보호나 선도의 부정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율적 참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에 대한 균형감을 형성하여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는 기반을 이 시기에 형성해 줄 수 있다.

둘째, 학생생활규정을 비롯한 선도규정 그리고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등은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신에 의거하여 어린이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최소한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 이루어지도록

록 학교교육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이제 더 이상 학교는 학생과 교사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 아니다. 학교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을 형성해 주어야 하며 이 때 지역사회와 혹은 미디어 그리고 기타의 평생학습 매체와의 네트워킹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의사소통기법은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훌륭하게 발전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견인해 내는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있는 주체적 인간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다.

참고문헌

김정래(1999),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정당화 논의".

『한국 청소년연구』, 제10권 제2호 33-49쪽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2000), 『학생생활과 학급운영』

학생생활관련규정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분석결과

1. 조사의 개요

- (1) 표본 : 2000년 5월 현재 수도권 거주 학생, 교사, 학부모
- (2) 표본 크기 : 학생 938명, 교사 276명, 학부모 176명

2. 자료처리

- (1) 자료처리 : SPSS통계 프로그램 이용

3. 통계분석

문 1) 학교 교칙에는 학생상벌규정(선도규정)과, 별도로 용의복장 규정, 체벌규정 등이 있는 데,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사례수 | ①이름과 | ②이름은 | ①+② | ③ 몇몇 | ④한번도 | 전 체 |
|-------|-------|-------|------|------|------|------|-------|
| | | 내용을 잘 | 다들어본 | | 것은 잘 | 들어본 | |
| | | 알고있다 | 적이있다 | | 모르겠다 | 적이없다 | |
| | | × | × | × | × | × | × |
| 학 생 | (935) | 10.9 | 24.8 | 35.7 | 58.5 | 5.8 | 100.0 |
| 학 부 모 | (176) | 14.8 | 35.8 | 50.6 | 42.0 | 7.4 | 100.0 |
| 교 사 | (275) | 31.3 | 37.8 | 69.1 | 29.5 | 1.5 | 100.0 |

학교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지도가 학생,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이름을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는 답변은 10%를 넘지 못했다.

문 2) 현재의 교칙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 | 사례수 | P2 | | | | | 전 체 |
|-------|-------|-------|------|-------|-------|-------|-------|
| | | ①교장이나 | ② 교사 | ③ 친구들 | ④ 부모님 | ⑤ 기 타 | |
| | | 교감선생님 | | | | | × |
| | | × | × | × | × | × | |
| 학 생 | (911) | 1.4 | 51.8 | 37.3 | 1.0 | 8.5 | 100.0 |
| 학 부 모 | (161) | 6.2 | 31.1 | 13.7 | 5.0 | 44.1 | 100.0 |
| 교 사 | (270) | 3.3 | 67.4 | 1.5 | 0.0 | 27.8 | 100.0 |

교사와 학생은 대부분 교사들로부터 규정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부모의 경우는 기타가 반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규정을 알게 된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학생들 중 37.3%의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다른 종류의 설문에서 나타나는 성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문 3) 현재의 교칙이 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①잘반영 | ② 조금 | ①+② | ③잘반영 | ④ 전혀 | ③+④ | ⑤잘모름 | 전 체 |
|-------|-------|------|------|------|------|------|------|------|-------|
| | | 하고있다 | 반영하고 | | 되지않고 | 반영되지 |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학 생 | (938) | 5.1 | 19.8 | 24.9 | 23.1 | 34.8 | 57.9 | 17.2 | 100.0 |
| 학 부 모 | (176) | 8.5 | 28.4 | 36.9 | 17.0 | 15.9 | 33.0 | 30.1 | 100.0 |
| 교 사 | (276) | 5.4 | 31.2 | 36.6 | 32.2 | 22.5 | 54.7 | 8.7 | 100.0 |

각 집단마다 자신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재의 학교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4) 현재의 교칙은 누구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문항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해 분석함)

| | 사례수 | ①교장 | ②교사 | ③학생 | ④학부 | ⑤교육 | ⑥생활 | ●하나 | ●해당 |
|-------|-------|------|------|------|------|------|------|------|-----|
| | | /교감 | | | 모 | 부나 | 지도부 | 이상의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학 생 | (938) | 57.5 | 45.2 | 7.7 | 11.6 | 32.7 | 50.6 | 98.7 | 1.3 |
| 학 부 모 | (176) | 51.7 | 39.2 | 11.9 | 10.8 | 34.7 | 39.2 | 99.4 | .6 |
| 교 사 | (276) | 48.9 | 28.3 | 3.3 | 6.5 | 31.9 | 42.8 | 98.6 | 1.4 |

각 집단마다 교장이나 교감등 관리자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관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 5) 현재의 교칙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문항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해 분석함)

| | 사례수 | ① 용의 | ② 체벌 | ③ 학생 | ④ 기타 | ●하나이 | ●전혀 |
|-------|-------|------|------|------|------|------|------|
| | | 복장규정 | 규정(벌 | 선도규정 | | 상문제됨 | 문제되지 |
| | | × | × | × | × | × | × |
| 학 생 | (938) | 56.9 | 44.5 | 36.8 | 11.5 | 97.9 | 2.1 |
| 학 부 모 | (176) | 30.7 | 49.4 | 21.0 | 10.8 | 92.0 | 8.0 |
| 교 사 | (276) | 44.6 | 37.0 | 34.1 | 8.0 | 92.8 | 7.2 |

문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벌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P6 | | | | | 전 체 |
|-------|-------|------------------|-----------------------------|---------------------|-----------------------------|----------------------|-------|
| | | ① 효과가 없으므로 없애야한다 | ② 효과는 어느정도 있지만비인간적이므로 없애야한다 | ③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유지해야한다 | ④ 효과는 없지만생활지도에유용하므로계속유지해야한다 | ⑤ 있다 하더라도그다지신경 쓰지않는다 | |
| | | x | x | x | x | x | |
| 학 생 | (918) | 22.2 | 38.8 | 7.6 | 8.3 | 23.1 | 100.0 |
| 학 부 모 | (170) | 5.3 | 31.2 | 20.0 | 28.8 | 14.7 | 100.0 |
| 교 사 | (257) | 24.9 | 26.8 | 13.2 | 11.3 | 23.7 | 100.0 |

교사 학생의 경우는 벌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문 7) 현재 체벌규정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P7 | | | | | | 전 체 |
|-------|-------|------------------------------|--------------------------|------------------------------|------------------------------|--------------------|-------|-------|
| | | ① 벌점제가 아닌 긍정적인 상점제를 위주로 해야한다 | ② 벌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할수있게 해야한다 | ③ 체벌은 폐지하고 상점제와 벌점제만 운용해야 한다 | ④ 상벌제 보다는체벌을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 | ⑤ 체벌규정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 ⑥ 기 타 | |
| | | x | x | x | x | x | x | |
| 학 생 | (905) | 31.8 | 22.9 | 12.2 | 5.4 | 21.5 | 6.2 | 100.0 |
| 학 부 모 | (171) | 35.7 | 33.3 | 14.0 | 5.3 | 8.8 | 2.9 | 100.0 |
| 교 사 | (261) | 38.7 | 22.2 | 5.0 | 20.3 | .8 | 13.0 | 100.0 |

각 단위 모두 벌점제보다는 상점제 위주의 긍정적인 체도를 원했고, 벌점제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벌점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벌점제가 행동의 제약만을 요구하고 있고, 교사마다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운영함에 따른 비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교사의 경우 체벌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20%정도 있었고, 학생의 경우엔 그 반대로 체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21%에 달했다. 이는 체벌을 바라보는 교사의 학생간의 입장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 8) 선도규정을 어겼을 때,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P8 | | | | | 전 체 |
|-------|-------|----------|--------------|--------------------------------|----------------------------------|-------|-------|
| | | ① 없애야 한다 | ② 계속 유지해야 한다 | ③ 교육적효과가없지만생활지도에유용하므로계속유지해야 한다 | ④ 교육적효과가있지만생활지도에도움이되지 않으므로 없애야한다 | ⑤ 기 타 | |
| | | x | x | x | x | x | |
| 학 생 | (928) | 18.2 | 30.2 | 28.3 | 17.5 | 5.8 | 100.0 |
| 학 부 모 | (173) | 6.4 | 45.1 | 32.9 | 13.9 | 1.7 | 100.0 |
| 교 사 | (273) | 8.4 | 47.6 | 24.5 | 9.9 | 9.5 | 100.0 |

문 9) 현재 선도(상벌)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P9 | | | | | 전 체 |
|-------|-------|---------------------|------------------------|----------------|----------------------------|-------|-------|
| | | ① 현재의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없다 | ② 생활지도 부와 교장의 의견만 반영한다 | ③ 징계를 위해서만 열린다 | ④ 학생들의 반권 등 학생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 ⑤ 기 타 | |
| | | x | x | x | x | x | |
| 학 생 | (904) | 9.1 | 25.7 | 15.3 | 46.8 | 3.2 | 100.0 |
| 학 부 모 | (168) | 13.7 | 20.2 | 17.9 | 45.8 | 2.4 | 100.0 |
| 교 사 | (259) | 8.9 | 12.0 | 42.9 | 29.7 | 6.6 | 100.0 |

문 10) 학생 용의복장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P10 | | | | 전 체 |
|-------|-------|------------------|--------------|-------------------|-------|-------|
| | | ① 현재의 규제는너무 엄격하다 | ② 더 강화 시켜야한다 | ③ 모는용의복장규제는 풀어야한다 | ④ 기 타 | |
| | | x | x | x | x | |
| 학 생 | (915) | 49.8 | 5.8 | 30.6 | 13.8 | 100.0 |
| 학 부 모 | (172) | 30.8 | 37.2 | 12.8 | 19.2 | 100.0 |
| 교 사 | (270) | 46.7 | 16.7 | 14.4 | 22.2 | 100.0 |

문 11) 다음의 학생선도규정에 대하여 귀하의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학교에서 어겼을 경우)

11-1.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것

| | 사례수 | P11R1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916) | 63.5 | 36.5 | 100.0 |
| 학 부 모 | (151) | 66.2 | 33.8 | 100.0 |
| 교 사 | (248) | 54.4 | 45.6 | 100.0 |

11-2. 속옷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 사례수 | P11R2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885) | 31.4 | 68.6 | 100.0 |
| 학 부 모 | (145) | 44.1 | 55.9 | 100.0 |
| 교 사 | (225) | 22.7 | 77.3 | 100.0 |

11-3. 두발규정(귀밑 3cm, 5cm, 옆머리 3cm 등)

| | 사례수 | P11R3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910) | 63.7 | 36.3 | 100.0 |
| 학 부 모 | (149) | 63.8 | 36.2 | 100.0 |
| 교 사 | (240) | 57.1 | 42.9 | 100.0 |

11-4. 파마, 염색, 무스사용

| | 사례수 | P11R4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912) | 76.8 | 23.2 | 100.0 |
| 학 부 모 | (149) | 90.6 | 9.4 | 100.0 |
| 교 사 | (243) | 66.3 | 33.7 | 100.0 |

11-5. 화장을 절대 할 수 없다

| | 사례수 | P11R5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864) | 74.7 | 25.3 | 100.0 |
| 학 부 모 | (141) | 88.7 | 11.3 | 100.0 |
| 교 사 | (212) | 59.0 | 41.0 | 100.0 |

11-6. 머리핀, 머리끈의 색이나 장식규제

| | 사례수 | P11R6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860) | 64.3 | 35.7 | 100.0 |
| 학 부 모 | (140) | 58.6 | 41.4 | 100.0 |
| 교 사 | (206) | 42.7 | 57.3 | 100.0 |

11-7. 교직원 화장실 사용 금지

| | 사례수 | P11R7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890) | 47.1 | 52.9 | 100.0 |
| 학 부 모 | (145) | 48.3 | 51.7 | 100.0 |
| 교 사 | (228) | 29.4 | 70.6 | 100.0 |

11-8.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경우

| | 사례수 | P11R8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788) | 30.5 | 69.5 | 100.0 |
| 학 부 모 | (133) | 60.2 | 39.8 | 100.0 |
| 교 사 | (178) | 25.3 | 74.7 | 100.0 |

11-9.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

| | 사례수 | P11R9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783) | 46.5 | 53.5 | 100.0 |
| 학 부 모 | (131) | 82.4 | 17.6 | 100.0 |
| 교 사 | (176) | 48.9 | 51.1 | 100.0 |

11-10. 폭력만화책이나 음란물 소지

| | 사례수 | P11R10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904) | 81.3 | 18.7 | 100.0 |
| 학 부 모 | (148) | 92.6 | 7.4 | 100.0 |
| 교 사 | (228) | 63.2 | 36.8 | 100.0 |

11-11. 흡연이나 음주

| | 사례수 | P11R11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918) | 95.5 | 4.5 | 100.0 |
| 학 부 모 | (150) | 97.3 | 2.7 | 100.0 |
| 교 사 | (251) | 95.6 | 4.4 | 100.0 |

11-12. 도박(판치기, 팔팔이, 카드놀이 등)

| | 사례수 | P11R12 | | 전 체 |
|-------|-------|--------|-----------|-------|
| | | ①징계한다 | ②징계하지 않는다 | |
| | | x | x | |
| 학 생 | (899) | 79.9 | 20.1 | 100.0 |
| 학 부 모 | (148) | 89.2 | 10.8 | 100.0 |
| 교 사 | (233) | 73.0 | 27.0 | 100.0 |

11-13. 허가받지 않은 집회/외부활동

| | 사례수 | P11R13 | | 전 체 |
|-------|-------|--------|-----------|-------|
| | | ①정계한다 | ②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873) | 65.9 | 34.1 | 100.0 |
| 학 부 모 | (147) | 81.0 | 19.0 | 100.0 |
| 교 사 | (218) | 66.1 | 33.9 | 100.0 |

11-14. 폭력씨를 결성

| | 사례수 | P11R14 | | 전 체 |
|-------|-------|--------|-----------|-------|
| | | ①정계한다 | ②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908) | 93.4 | 6.6 | 100.0 |
| 학 부 모 | (148) | 97.3 | 2.7 | 100.0 |
| 교 사 | (246) | 91.1 | 8.9 | 100.0 |

11-15. 집단따돌림

| | 사례수 | P11R15 | | 전 체 |
|-------|-------|--------|-----------|-------|
| | | ①정계한다 | ②정계하지 않는다 | |
| | | × | × | |
| 학 생 | (890) | 78.5 | 21.5 | 100.0 |
| 학 부 모 | (146) | 86.3 | 13.7 | 100.0 |
| 교 사 | (236) | 74.2 | 25.8 | 100.0 |

문 12) 다음의 학생선도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해당란에 표시해주시시오
(본인의 생각은?)

12-1.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것

| | 사례수 | P12R1 | | | 전 체 |
|-------|-------|----------|-----------------|-------------|-------|
| | | ①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6) | 19.8 | 42.8 | 37.5 | 100.0 |
| 학 부 모 | (166) | 44.0 | 49.4 | 6.6 | 100.0 |
| 교 사 | (267) | 19.5 | 73.4 | 7.1 | 100.0 |

12-2. 속옷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 사례수 | P12R2 | | | 전 체 |
|-------|-------|----------|-----------------|-------------|-------|
| | | ①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14) | 9.6 | 34.0 | 56.3 | 100.0 |
| 학 부 모 | (166) | 31.3 | 42.2 | 26.5 | 100.0 |
| 교 사 | (258) | 14.3 | 64.7 | 20.9 | 100.0 |

12-3. 두발규정(귀밑 3cm, 5cm, 옆머리 3cm 등)

| | 사례수 | P12R3 | | | 전 체 |
|-------|-------|----------|-----------------|-------------|-------|
| | | ①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1) | 7.6 | 35.3 | 57.1 | 100.0 |
| 학 부 모 | (164) | 28.0 | 48.8 | 23.2 | 100.0 |
| 교 사 | (262) | 12.2 | 71.8 | 16.0 | 100.0 |

12-4. 과마, 염색, 무스사용

| | 사례수 | P12R4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7) | 31.0 | 40.9 | 28.2 | 100.0 |
| 학 부 모 | (166) | 79.5 | 14.5 | 6.0 | 100.0 |
| 교 사 | (265) | 38.9 | 54.3 | 6.8 | 100.0 |

12-5. 화장을 절대 할 수 없다

| | 사례수 | P12R5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890) | 39.3 | 39.0 | 21.7 | 100.0 |
| 학 부 모 | (166) | 72.9 | 20.5 | 6.6 | 100.0 |
| 교 사 | (250) | 41.6 | 52.4 | 6.0 | 100.0 |

12-6. 머리핀, 머리끈의 색이나 장식규제

| | 사례수 | P12R6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880) | 18.3 | 35.8 | 45.9 | 100.0 |
| 학 부 모 | (163) | 32.5 | 48.5 | 19.0 | 100.0 |
| 교 사 | (248) | 9.3 | 69.4 | 21.4 | 100.0 |

12-7. 교직원 화장실 사용 금지

| | 사례수 | P12R7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0) | 19.5 | 42.4 | 38.2 | 100.0 |
| 학 부 모 | (166) | 34.3 | 48.8 | 16.9 | 100.0 |
| 교 사 | (257) | 18.3 | 70.8 | 10.9 | 100.0 |

12-8.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경우

| | 사례수 | P12R8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864) | 12.7 | 37.4 | 49.9 | 100.0 |
| 학 부 모 | (164) | 49.4 | 36.6 | 14.0 | 100.0 |
| 교 사 | (242) | 19.0 | 66.1 | 14.9 | 100.0 |

12-9.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

| | 사례수 | P12R9 | | | 전 체 |
|-------|-------|----------|-----------------|-------------|-------|
| | | ①징계해야 한다 | ②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859) | 25.3 | 37.0 | 37.7 | 100.0 |
| 학 부 모 | (163) | 76.1 | 17.8 | 6.1 | 100.0 |
| 교 사 | (241) | 41.9 | 52.7 | 5.4 | 100.0 |

12-10. 폭력만화책이나 음란물 소지

| | 사례수 | P12R10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7) | 60.2 | 27.8 | 12.0 | 100.0 |
| 학 부 모 | (169) | 85.8 | 13.6 | .6 | 100.0 |
| 교 사 | (260) | 58.5 | 41.2 | .4 | 100.0 |

12-11. 흡연이나 음주

| | 사례수 | P12R11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6) | 84.1 | 9.4 | 6.5 | 100.0 |
| 학 부 모 | (169) | 96.4 | 3.0 | .6 | 100.0 |
| 교 사 | (268) | 88.4 | 11.6 | 0.0 | 100.0 |

12-12. 도박(판치기, 윗잡이, 카드놀이 등)

| | 사례수 | P12R12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8) | 59.5 | 27.6 | 12.9 | 100.0 |
| 학 부 모 | (169) | 85.2 | 12.4 | 2.4 | 100.0 |
| 교 사 | (267) | 77.5 | 22.5 | 0.0 | 100.0 |

12-13. 허가받지 않은 집회/외부활동

| | 사례수 | P12R13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3) | 44.5 | 33.7 | 21.8 | 100.0 |
| 학 부 모 | (166) | 70.5 | 24.1 | 5.4 | 100.0 |
| 교 사 | (256) | 46.9 | 44.9 | 8.2 | 100.0 |

12-14. 폭력씨를 결성

| | 사례수 | P12R14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8) | 86.3 | 8.1 | 5.6 | 100.0 |
| 학 부 모 | (169) | 94.1 | 5.3 | .6 | 100.0 |
| 교 사 | (268) | 96.3 | 3.7 | 0.0 | 100.0 |

12-15. 집단따돌림

| | 사례수 | P12R15 | | | 전 체 % |
|-------|-------|--------------|------------------------|----------------|----------|
| | | ① 징계해야 한다 | ②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 ③ 간섭할 필요 없다 | |
| | | % | % | % | |
| 학 생 | (927) | 78.5 | 15.0 | 6.5 | 100.0 |
| 학 부 모 | (169) | 91.1 | 7.1 | 1.8 | 100.0 |
| 교 사 | (263) | 86.3 | 13.7 | 0.0 | 100.0 |

문11과 12에서는 현재의 학생생활관련 규정 중 몇 가지 항목을 반해하여 실제 징계의 유무 및 징계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몇몇 가지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실제 징계의 유무를 묻는 11번 문항에서 각 규정에 대해 실제로 징계한다고 답한 학부모들이 교사나 학생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와 이성과 껌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비율이 교사와 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 현장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응답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교직원 화장실 사용과 폭력만화책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설문문항을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징계 필요성을 묻는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학부모들의 답변이 교사와 학생의 답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음주, 도박, 폭력씨클, 집단따돌림을 제외하고는 징계해야한다는 비율이 교사와 학생에 비해 두 배 가깝게 나왔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징계해야한다는 비율은 대부분 교사와 비슷했으나, 규율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 13) 학교의 선도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 사례수 | P13 | | 전 체 % |
|-------|-------|-------------|-------------|----------|
| | | ① 참여한 적이 있다 | ② 참여한 적이 없다 | |
| | | % | % | |
| 학 생 | (895) | 4.9 | 95.1 | 100.0 |
| 학 부 모 | (171) | 7.6 | 92.4 | 100.0 |
| 교 사 | (253) | 20.9 | 79.1 | 100.0 |

문 14) (13번 ①에 답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문항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해 분석함)

| | 사례수 | ① 각종 설문조사 통해 의견반영 | ② 학생회 학급회의 학부모회 교사회의 통해참여 | ③ 학교운영위원회 통해참여 | ④ 기타 | ● 한방법 이상참여 | ● 참여 한적없다 |
|-------|-------|-------------------|---------------------------|----------------|------|------------|-----------|
| | | % | % | % | % | % | % |
| 학 생 | (110) | 39.1 | 42.7 | 9.1 | 20.9 | 99.1 | .9 |
| 학 부 모 | (66) | 40.9 | 40.9 | 7.6 | 21.2 | 98.5 | 1.5 |
| 교 사 | (53) | 35.8 | 41.5 | 5.7 | 26.4 | 98.1 | 1.9 |

문 15) 선도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문항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해 분석함)

| | 사례수 | ①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대로만드는 것이 좋다 | ② 교장이나 교감의 견대로만드는 것이 좋다 | ③ 생활지도부나 교사의 주도만드는 것이 좋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서만드는 것이 좋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참여만드는 것이 좋다 | ⑥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학 생 | (937) | 4.2 | 3.4 | 7.7 | 20.0 | 71.0 | 14.3 | 5.9 |
| 학 부 모 | (176) | 6.8 | 5.1 | 21.0 | 40.9 | 59.7 | 4.5 | 3.4 |
| 교 사 | (276) | 1.1 | .7 | 16.3 | 24.6 | 62.0 | 6.5 | 9.4 |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신 현 직(계명대 법학과 교수)

1. 우리 교육법상의 학생의 권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드디어 어린이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공교육은 식민지와 독재권력에 의해 형성되었던 국가주의적 교육체제와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학생을 교육의 대상 내지 통제대상으로만 볼 뿐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학교는 고통의 현장이 되고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에의 권리는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규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근거나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의 모든 인권이지만,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자치권과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선택권 교육내용결정 기타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들은 거의 박탈되어 있는 실정이

며, 좀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권리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및 학습자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제3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학생을 통제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자의 인격존중과 개성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체벌이나 복장통제 등이 인정되고 있고, 그들의 발언권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서는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고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뿐인데, 거기서 학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학생포상 및 징계(동조 1항 7호)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제8호) 등이 있다.

우선 학교규칙 내지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정권자를 여전히 학교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학교참가를 회피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그에 관한 심의권이 보장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규칙은 규정집에나 있을 뿐 학교안내 책자에도 없고 아무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학교자치를 위한 규범적 효력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의 제정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적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에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동조 2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대전제와 학생도 교육의 주체임이 여기서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의 일차적 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의 학교참여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는 발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가, 학습권이란 단순히 '학습하고 공부할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운영방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이 있는데(제23조), 이들 사항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의사결정기구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제도상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입법례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학생의 자치권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학교협의회는 물론 란트의 학교위원회에도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까지 학부모나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인사 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순히 학생자치권의 수준이 아니라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란 것이 적어도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식만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학생은 학교의 대상 내지 객체가 아니며, 비록 미성숙, 무능력, 무사려하고 고집스럽더라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 존엄이 존중되어야 하며, 적어도 교육은 피교육자의 발전가능성 내지 성장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교육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교육은 어린이나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하며, 그들이 미래사회의 주권자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른이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궁극 목적은 그들의 '인격형성'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것은 곧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러한 권리들은 그들이 미성년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조항(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은 교육자의 전문적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도록 하되, 부모의 참여는 물론 학생의 참여도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3. 학생자치권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에 관한 규정은 자치활동의 보장과 징계에 관한 규정 둘뿐이다. 동법 제3장 제1절 '학생'에서는 '학생의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 하고, 시행령에서도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고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즉 학생회칙들은 대부분이 학생회의 조직과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권한이나 활동 내용에 관해서는 명목상 자치활동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사전 사후의 제약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불응할 때에는 항상 일방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치활동에 관한 실제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느 중학교의 예를 보면, '목적'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권리 함양'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며 나아가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학내외 활동, 학생복지 및 권익옹호와 바람직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학예 체육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한 활동,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활동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학생권익옹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학교가 해 주어야 할 교육내용들일 뿐 학생자치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학생의 건전한 문화 조성'이나 '학교발전에의 기여'보다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영역들, 즉 또래 집단 속에서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들 자신들의 권리들을 정립해 가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의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징계 및 일반인권의 보장

또한 동법 제18조에서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계 시에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징계의 종류의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제31조). 물론 징계와 관련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재심절차가 빠져있는 것은 물론 실제적 보장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다.

즉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만 할 뿐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퇴학처분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동조 제1항). 뿐만 아니라 퇴학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4항), 그 기준이 애매하할 뿐 아니라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으며, 실제 각급학교의 선도규정들에서는 10여 가지의 사유들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서 들고 있는 각 학교의 규정들의 예를 보면,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기타 위의 사

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이나 '화장실에서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등의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일반적 자유권마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고 하는 규정은, 원래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를 모방하여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려던 것이 교육계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되면서 도리어 체벌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고 말았다. 체벌은 명백히 형법상의 폭행 내지 폭력행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가 아닌 한 '교육목적을 위한 직무상의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폭력은 인격적 존재에게 가해지는 가장 야만적인 인격권 침해행위이며, 따라서 폭력을 매개로 하는 교육행위는 더 이상 학습자의 학습권 즉 인간적 성장발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지침(1999년 1월 29일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학생선도대책)에 의하면,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대책으로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라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현재 각 학교의 학생선도규정들은 학생대표는 물론 학부모대표의 합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교육청의 기준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학생징계에 관한 대통령령을 획일적으로 반복하여 임의적으로 사유들을 나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나아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매맞는데 익숙해져서 별점이라는 점수보다 매맞기를 원한다는 현실이다. 이는 곧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인권의식의 말살을 의미한다는 심각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직접체벌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간접체벌의 경우에도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학생자치회와의 협의를 거쳐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장, 두발 등의 자유는 이미 80년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교복과 용모에 관한 규제가 과거로 회귀한 상황이

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규격 속에 간혀 통제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양말, 손톱까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내지 Life-style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용의복장규정에서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장신구'로 금지하는 것에 반지, 목걸이 시계, 귀걸이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학생신분에 어긋난다'는 기준은 도무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들은 오로지 기성세대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전근대적 사고와 타성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학생통제만을 위하여 기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나 소지품 검사 등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서는 거의가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앞서 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적 인권 보장 규정에 직접 위반이 된다. 따라서 각 학교는 헌법상의 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학생들의 일반적 자유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이는 더 이상 '교육목적상 의 필요'라는 애매한 기준만으로 학생의 일반 인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권제한의 한계란 판례에서 보듯이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경우 또는 남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순히 소란의 우려가 있다거나 학생통제의 편의를 위한 제한들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침해로서 위헌이 된다. 또한 학교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명랑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최소한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학교규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교육의 성과가 그들 자신의 깨달음과 인간적인 성장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때 학생들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교육과정에서 그들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지 아니하고서는 교육 목적 달성이란 불가능하다.

학생의 인권은 그들도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교육과정상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권리에 직접 관련되는 학교규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학생선도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학생징계 내지 인권침해는 이제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자치적인 집단의사를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규정들을 시급히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발표

목천중학교 교사 이우경

들어가는 말

“나는 중학교 다닐 때 교문지도에 걸려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다. 온통 검은색 운동화를 신는 것이 학교 규정인데, 내가 신은 운동화 아랫부분에 흰색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때 한치의 융통성 없이 단속하는 교사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럼에도 학생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과거의 나와 같이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이다. 작년 초 학교 규율을 재정비하려고 여러 학교의 규율들을 비교해보다가, 교육민주화를 위해 해직 당하고 감옥에 갔던 지난 세월이 다 헛된 것이었다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선도규정을 만들려고 여러 학교 선도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비교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런 일에 무심했던 나의 지난 교사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을 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줄음을 참을 수 없거나, 집안 사정으로 조퇴를 여러 번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느 고등학교 규율의 경우 비오는 날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우산을 씌워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경우 사흘간 교내 봉사 처해지는 학교도 있고, 아무리 추워도 십만여 원이 넘는 학생용 맞춤 코트 외에는 잠바류 등의 덧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한 학교도 있다. 현재의 학교규율대로라면 아이들은 완전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아둔 채 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사회와 청소년의 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규율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중, 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생생활에 관한 규율들은 “학생 징계규정” 혹은 “학생 선도규정” 그리고 “복장규정”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학생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안하고 교장이 결재를 통해 승인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학생에게는 학교규율이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과정 어디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해체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고 있는 현 사회변화에 맞추어 전근대적인 학교규율도 대대적으로 손질되어야 마땅하고, 규율의 제정이나 집행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끊임없는 간섭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규율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일선교사들의 학생관도 바뀌어야 한다. 붕괴되어 마땅한 학교의 구체제 속에서 학생은 훈육의 대상이며,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제 억압적인 국가기구나 관료체제의 해체가 불가피한 세상이 되었다. 교사 학생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훈육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인간 관계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직선제 총학생회 구성과 복장규정의 개정

목천중학교는 작년에 7학급이었기 때문에 학생주무를 맡게 된 나는 그야말로 ‘무늬만 학생부장’이었다. 학기초에 아산의 충무교육원에서 도내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가 있었다. 도내 중고교의 모든 학생부장들이 모이는 회의였다. 가보니 회의장이 다 우중충할 정도로 450대의 남교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게다가 인상도 다부지거나 험악하거나 학생통제 잘할 것 같은(순전히 나의 주관적 느낌이지만) 인상들이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통제 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학교’ 자체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몰려왔다. 그 뒤로 나는 군 교육청 단위로 열리는 학생부장 회의도 되도록 참석하지 않았다. “그놈의 형사계장 회의에 내가 왜 가?” 중얼거리면서.

교직생활 10년만에 학생과 일은 처음이라서 더듬더듬 재작년의 제 규정들을 뒤져보았다. 아, 직선제 학생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다. 재작년에 이 학교로 옮겨왔을 때는 이것



저것 살펴볼 겨를도 없었거니와 가끔 대의원회 비슷한 걸 하기에 있는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 학생자치비로 책정된 예산을 써야 하므로 가끔씩 반장, 부반장들을 모아 놓고 빵이나 우유를 사주거나, 스승의 날 행사를 잘 하도록 지시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정도의 회의를 했던 모양이었다. 다른 학교 학생회칙을 부랴부랴 찾아서 직선제 총학생회를 구성할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3월말이었다.

다른 학교의 학생회칙도 참 재미있었다. 어떤 학교는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아예 학생회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그 선출규정은 대통령도 뽑을 수 있을 만큼 거창한 일정으로 되어있기 일쑤여서 학생부에서 아예 일을 만들 엄두를 내기 어렵게 되어있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선제 학생회를 만드는 목표 자체를, 학생의 자치활동 자체에 두기 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적 선거절차를 배울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만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실제로 직선제 학생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른 중학교들에서도 거창하게 학생회장 선출을 하고 나면 별다른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학생회칙이 따로 있는 경우도(대다수 고등학교) 학생회의 활동내용, 회원의 권리, 학교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거나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모금활동을 할 수 없다” 등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더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작년부터 법령이 바뀌어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지식한 학교장을 설득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에라, 처음 하는 일이니 내가 우물떡 주물떡 해놓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고 비교적 괜찮다 싶은 조항들을 조합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서 학생회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이것도 그렇다. 학생회칙을 왜 학생부장이 만들고 있나. 학생들이 만들어야지) 다른 학교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첫째, 대의원회의 상위 기구는 당연히 ‘학생총회’여야 한다. 1년에 두 번 학생 총회를 열도록 했고 실제로는 똑같은 안건으로 학급별 분할총회를 실시했다. 둘째, 학생회의 회장단과 각 부서장들로 이루어진 ‘상임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려면 한달에 한 번 하는 대의원 회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자주

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대표가 당연직 대의원이 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게 되고, 그 동아리 대표들이 대거 대의원회에 들어서 총학생회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만을 바라고 바랄 뿐이다. 넷째,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학교측과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다. 복장규정 개정 때 실제로 총학생회 회장단이 학교 운영위에 출석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작년에는 세 명의 총학생회장 후보가 하나같이 복장규제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작년까지 학생부의 복장규제가 워낙 엄했기 때문이었다. 제 1회 목천중학교 총학생회가 출범한 작년 4월 초 우리는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한 복장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작 뒤져보니 문서화된 복장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복장규제는 순전히 학생부장 개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복장규정 개정이 아니라 복장규정 제정인 셈이었다.

아이들은 첫 번째 학생총회를 학급별 분할총회로 개최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복장규정을 의제로 삼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다소 완화된 복장규정을 생각했을 뿐, 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복장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실의 벽이 워낙 높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기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잘 논의하도록 당부했다.

총회 결과 아이들은 두발규정에 대하여, 종전에 귀밑 1cm로 제한하던 여학생들의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묶을 수 있도록 했고, 짧은 스포츠형으로 제한하던 남학생들의 머리는 눈썹 위까지는 얼굴형태에 어울리게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겨울에 니트 조끼를 교복 안에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운동화의 색깔 규제를 없애고, 비싼 농구화나 지나치게 커다란 운동화만 신지 않는다면 키가 작아 고민인 친구들을 위해 고무 굽의 높이가 좀 있는 운동화 정도는 신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두스를 바르는 것은 안되고, 핸드폰은 규제하되 삐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학생 총회는 ‘중학생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는 핸드폰을 가진 학생이 절반쯤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거의 공격적으로 중, 고등학생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학생총회 결과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에서는 새로운 복장규정안을 만들어 교무회의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무회의 심의 때 다



소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총학생회 산하에 자율선도부를 두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복장규제를 하도록 한 대목에서 마음을 놓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복장규정안을 지지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길 경우, 세 번까지는 경고, 또 다시 세 번 더 누적되면 얼굴 사진을 확대하여 교내에 게시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시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작 나와 총학생회 회장단이 진땀이 나도록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학교운영위의 심의과정에서였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수준도 결코 보수적인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못지 않게 보수적이어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교장이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조차 심각히 고려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반영되어 우리학교는 새로운 복장규정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바꾸어낸 것은 학교의 제 학생관련 규율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복장규정일 뿐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복장규제를 완화하였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1학년들이 만든 우리학교 광고를 보니 여학생들이 머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커다란 학교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복장규정을 새로 바꾸고 나서 총학생회 산하 자율선도부를 구성했다. 2. 3학년 중 자원한 학생들을 모아 선도부를 구성하고, 선도 명찰을 만들어준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는데 선도부가 1,2학년을 짊어잡았기 때문에(선도부는 아침 8시 40분이면 자율적으로 모여 각 교실을 순회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나는 작년 1년 내내 교문지도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3학년 중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기는 놈들이 좀 있는 게 문제였지만 학생부가 뉘달을 안 하니 담임들이 나서서 지도를 했다. 그래도 제대 말년에는 군인들도 좀 봐주지 않던가?

올해도 나는 여전히 '무늬만' 학생부장이 되었다. 제 2대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나자 아이들은 대의원회의를 열어 복장규정의 '시행령'을 다소 손질했는데,

1. 복장규정을 어겨 누적된 경고는 학기가 지나면 전체 학생 모두 소멸해주도록 하고
2. 여학생들의 머리끈과 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색깔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며
3. 3회 어길 시 경고, 5회까지 어기면 교내에 확대된 얼굴사진을 게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규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도규정(학생징계 규정)에 대하여

제 1 조 (학생 선도의 목적)

선도(善導)라 함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교육행위는 선도(善導)이다. 특히 인성지도, 생활지도의 모든 과정은 선도(善導)이다. 선도규정을 효율적인 학생 통제의 수단이나 합리적 징계절차 정도의 협소한 의미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 선도의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심성을 지니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를 익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관계를 배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 2 조 (학생 선도의 기본 방침)

1. 학생 인성지도와 생활지도의 실천적 주체인 담임의 모든 판단과 노력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담임은 현재의 학교 체제 속에서 학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이다. 담임의 의견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선도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학교와 제반 사회관계 속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 교사들은 월 1회 실천적인 교사 회의를 통해 문제 성향을 보이는 학생이나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현황을 공유하고, 전체 교사들의 협의를 거쳐 지도 방안을 도출 하며,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지도한다.

나. 학생들은 자주적인 학생회 및 학급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학생 의무 조항 및 내규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경고 및 공개, 자율 법정 운영 등의 활동으로 자율선도 활동을 벌인다.

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의 결연 지도를 하도록 한다.

인용이 다소 길었는데, 우리 학교 선도규정의 처음 부분이다. 그런데 정작 선도의 목적



이나 기본 방침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작년에 별로 한 일은 없었다. 다만 딱 한 차례 목천중학교 병설 대안학교를 열었다. 이른바 부적응 학생 특별지도 프로그램인데, 유기농 공동체를 운영하는 천안시 북면 단비교회의 젊은 목사님 내외와 총각 전도사님과 마을 할머니들이 대안학교 교사들이다. 작년에 부모가 돌보지 않아 자꾸 가출하는 녀석이 있기에 한 번 시도해 보았다.

우선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오후 시간이 비는 선생님들이 녀석과 일대일로 만나 심성훈련을 하거나,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목공예를 하는, 학교 안 '작은학교'라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섯 분의 선생님이 5일간 지도를 했다. 나는 특별히 훈계를 하지는 말고 그저 아이가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느낌만 갖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녀석도 재미있어 했고, 속없는 다른 친구 녀석들이 부러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녀석의 순수한 면을 보고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 일주일간 녀석을 목천중학교 병설 대안학교에 입학시켰다. 이것은 학교 선도규정에 미리 부적응 학생의 경우 지역의 다른 시설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입학금으로 무공해 주방세제를 사다 드렸다. 녀석은 가자마자 솜씨를 발휘해 목사님 내외와 그 집 꼬마의 머리칼에 노란 물을 들여 놓았다. 농땡이를 부리기도 했지만 농사일도 제법 돕고, 꼬마 아이들과 곤잘 놀아주기도 했다.

녀석이 대안학교에 입학한 기간동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녁에 몇 번이나 때로 몰려가 단비교회 식량을 축냈다. 목공반 선생님이 솜씨를 한껏 부려 탁자를 만들어다 드리고, 학부모회장님이 20만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학교에 돌아왔지만 녀석의 가정과 학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 녀석은 또 가출하고 급기야 의무교육 유예를 신청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녀석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이 교육의 성공이란 말인가. 어디에서건 대안학교에서의 따듯했던 기억은 녀석에게 척박한 세상을 건디는 데 얼마간 영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맺는 말

얼마전 '학교붕괴'가 한동안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언론에서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을 내리고, 떠들썩해 있는 동안 일선학교에서는 교무회의 시간에 '수업분위기'를 좀 잡아라, 수업 안 듣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라' 등의 주문이 교사들에게 쏟아졌다. 일선 교육관료들이 학교붕괴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저급하게 이해하고 있는 한, 학교는 붕괴되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 땅에서 30여 년이 넘도록 지속된 개발독재 시절에 학교는 훈련된 값싼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기구였고, 부도덕한 정권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기관이었다. 게다가 잘하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바늘구멍으로, 계급간 모순을 완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 서슬 시퍼렷던 시절의 학교체제를 여전히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학교는 붕괴되어 마땅하지 않은가?

몇 달 전 YWC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서울의 중학생 중 50%가 넘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획일적인 교육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새로운 천년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된다면 학교는 붕괴되어 마땅하지 않은가?

결국 학교붕괴란 학교 자체의 붕괴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제 시절의 학교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업을 듣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들의 모습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가 시대에 맞게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이 완결되기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기에는 아이들의 답답한 처지가 너무 절박하다. 지금 학교내에서도 찾아보면 변화의 틈새는 있다. 뜻 있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학생부의 일(서울에는 학생자치부라는 부서도 있다고 들었다.)을 자임하면 된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가장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학생부'는 '학생징계부'가 아닌 '학생복지문화부'가 될 수도 있다.



학 생 선 도 규 정

목 천 중 학 교

제 1 장 학생선도의 목적과 기본 방침

제 1 조 (학생 선도의 목적)

선도(善導)라 함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교육 행위는 선도(善導)이다. 특히 인성지도, 생활지도의 모든 과정은 선도(善導)이다. 선도규정을 효율적인 학생 통제의 수단이나 합리적 징계절차 정도의 협애한 의미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 선도의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심성을 지니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를 익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관계를 배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 2 조 (학생 선도의 기본 방침)

1. 학생 인성지도와 생활지도의 실천적 주체인 담임의 모든 판단과 노력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담임은 현재의 학교 체제 속에서 학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이다. 담임의 의견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선도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학교와 제반 사회관계 속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가. 교사들은 월 1회 실천적인 교사 회의를 통해 문제 성향을 보이는 학생이나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현황을 공유하고, 전체 교사의 협의를 거쳐 지도 방안을 도출하며,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지도한다.
 - 나. 학생들은 자주적인 학생회 및 학급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학생 의무 조항 및 내규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경고 및 공개, 자율 법정 운영 등의 활동으로 자율선도 활동을 벌인다.
 - 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상담과 고충처리 등의 결연 지도 및 사회성과 인간관계지도 등의 특별교육을 하도록 한다.
3. 체벌과 징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되, 해당 사안을 명문화하여 학생,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제 2 장 학생 선도 위원회



제 3 조 (구성 및 의결)

1. 본 선도위원회(이하 본회)는 교감, 주임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부 선도 담당 교사, 전학년 담임교사(현재 학교에 재임시), 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2. 교감은 본 회의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주임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본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기능)

1. 본회는 담임 교사가 학생 선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때 이를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집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을 한다.
2. 본회는 규정에 명시된, 명백한 징계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 5 조 (진술)

본회는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모든 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 전에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학교장 재심부의)

학교장은 본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 7 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내의 봉사>는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내 특별교육과, 지역사회 관련기관 위탁 특별교육으로 나누되, 교내 특별교육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고, 유관기관 위탁 특별교육은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기간을 정한다.(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경우 복면 단비 교회 유기농 공동체 체험을 통해 심성훈련 및 인간관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충남 청소년 상담실에 위탁하여 심리 검사 및 상담, 필요시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탁함)
3. <재택학습>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 (방법)

1. <학교내 봉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정상 등교하여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의 봉사를 하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나. 매일 감화력 있는 글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부장 등의 훈화 및 지도를 받는다.
2. <특별교육 이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교내 특별교육의 경우 매일 정상 등교하여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체 교사회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해 협의한 후 지도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전체 교사가 참여하는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나. 유관기관 위탁 특별교육의 경우 학교에는 등교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가서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생은 출석 확인증과 교육 이수증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특별교육 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선도위원회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학부모 이행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예 : 자녀 구타금지, 자녀와의 대화 등 학생에게 필요한 가정환경 조성, 또는 가족 상담과 심리 치료 과정에 반드시 학부모가 함께 할 것 등)
3. <재택학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선도위원회가 <재택학습>을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등교하지 않고, 학부모의 책임 하에 <재택학습>을 실시하며, 이 기간의 출결은 '사고 결'로 한다.
 - 나. <재택학습> 기간 동안은 가정에서의 상담 및 학습 내용을 일지로 작성하여 등교시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재택학습> 후 학생의 향후 거취에 대하여 학교장과 선도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징계 기준)

1. 다음 각 호는 <학교내 봉사>에 처한다.
 - 가. 금우를 헐박,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자
 - 나. 정기고사 시 부정행위를 한 자
 - 다. 학교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 라. 고의적인 불성실, 지속적인 변학분위기 방해 등으로 학급 공동체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다음 각 호는 <특별교육 이수>에 처한다. 교사회회의 심의와 판단을 바탕으로 경중을 가려 <교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사회 유관기관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한다.

가. 학생답지 못한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예: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여 적발된 자)

나. 되풀이되는 무단 가출로 학교에 누를 끼친 자

다. 절도 등의 행위로 경찰에 연행된 자

라. 분드 등 환각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자

3. 다음 각 호는 <재택 학습>에 처한다.

가. 급우를 고의적 지속적으로 괴롭힌 자.(언어 폭력, 소지품 숨기기, 급품 요구 등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 등)

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흉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자

라. 교사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자, 또는 타인을 사주하여 폭행한 자
마. 폭력조직 등에 가담하여 활동한 자

제 10 조 (징계의 적용 등)

1. 본 규정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안을 계속 발생시킨 자로서 개선의 징이 없는 자는 상위 단계의 징계를 적용한다.
2. 징계를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의 포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3. 전 학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학생회 대의원 및 임원 선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 총학생회 대의원 및 임원으로서 동일학년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5. 교사 중 부정행위는 그 경중에 따라 <학교내 봉사>에서 <특별교육 이수 > 까지 처할 수 있으며 해당과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교사회와의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징계의 수위를 정한다.

제 11 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 12 조 (징계학생 교사용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교사에 응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13 조 (징계 정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부모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정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4 조 (징계 해제)

1. 징계의 해제는 담임교사 및 학생부장이 개선의 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2.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생 체벌 규정

제 15 조 (방침)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6 조 (절차)

1. 학부모에게 체벌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체벌한다.
3. 학생에게 체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학생이 수긍할 때 체벌한다.

제 17 조 (체벌 기준)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기거나 불손한 언행을 했을 경우
2.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기타 징계의 전 단계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18 조 (체벌 방법)

1. 체벌 교사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2. 매는 길이 60cm, 지름 1.5cm 이하의 표면이 매끄러운 나무를 이용한다.
3.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 중 가장 안전한 손바닥, 둔부로 제한한다.



- 4. 매에 의한 체벌은 사안별로 열 대 이내에서 가능한 타 학생에게 노출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
- 5.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고려하며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 19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 부 칙 ■

제 1 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 개정된 본 규정은 1999년 3월 일부부터 효력을 갖는다.

목 천 중 학 교 복 장 규 정

1999학년도 제 1회 학생총회의 의결과, 교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두발규정 : 학생회의 건의대로 남학생은 종전의 스포츠 형 짧은 머리에서 눈썹 위까지 얼굴형에 맞는 단정한 머리 형태로 허용함. 여학생은 종전의 귀밑 1cm라는 길이 제한을 없애고 어깨선까지 기를 수 있되,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 형태로 묶는 것을 허용함. 단, 일체의 머리띠나 요란한 머리핀 장식 등을 금지하며, 머리끈과 머리핀은 검정색, 갈색만 허용함. 일체의 피어, 염색, 스프레이, 젤, 무스의 사용은 금함
2. 복장규정 : 학생회의 건의를 대폭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 1) 남학생 바지는 종전대로 단정한 폭과, 발뒤꿈치까지의 길이로 한정하고,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선(무릎을 가리는)으로 한다. 남녀 학생 공통으로 겨울철에 색깔이나 무늬가 요란하지 않은 니트 조끼를 상의 속에 입는 것을 허용한다.
 - 2) 양말은 남학생의 경우 색을 종전대로 검정, 흰색, 회색으로 한정하되, 스포츠양말을 신을 수 있도록 한다. 여학생의 경우, 스타킹은 종전대로 검정, 살색으로 하고, 양말도 검정, 흰색으로 한정하되, 간소한 무늬가 박힌 것 정도를 허용한다. 도시나 루즈삭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신발의 경우 반드시 검정, 검색일 필요는 없으나 형광색 등 색깔이 현란한 운동화는 불허하며, 농구화, 칼구두 등은 불허하되, 고무창 높이가 약간 있는 운동화, 굽 5cm 이하의 단화(끈 있는 것, 끈 없는 것 모두)를 신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4) 일체의 악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를 허용하지 않는다.
3. 소지품규정 : 학생회 건의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교사협의회의 의결로 핸드폰, 담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기타 학생 신분엔 걸맞지 않은 소지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다.

※ 삐삐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맞벌이 부모의 아이에 대한 통신수단이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함※

●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자체 선도 방안 ●

※ 총학생회의 의결에 따라 복장규정은 총학생회에서 자체 선도를 하도록 하고, 학생부는 이를 감독, 지도한다.※

1. 총학생회 자율선도부가 등교시 출입문에서 복장검사를 한다.
2. 두발, 복장 규정 등을 어겼을 경우, 3번까지는 경고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사진을 확대하여 얼굴 벽보를 만들어 게시하고, 반성문을 써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며, 그래도 어기면 담임 선생님께 보고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자율선도부에서는 재판을 열어 그 결과에 따라 학생부나 선도위원회에 넘기도록 한다.
3. 학생부는 이를 지도, 감독하며, 총학생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머리를 직접 자르거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목천중학교 학생 자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학 생 부

목 천 중 학 교

목 천 중 학 교 학 생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목천중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전교생의 대표 기구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권리 함양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며 나아가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의무취학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의무취학 유예가 인정된 날로부터 복교시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활동)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학내외 활동
2. 학생복지 및 권익 옹호, 바람직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3. 학예, 체육,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한 활동
4.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5.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준수하며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니며, 본회의 각종 자치기구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학생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으로 한다.

1. 임원의 직능

가.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집행부서장을 임명한다.

나. 총학생회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의 선출

가.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부회장은 전교생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임원 선출은 "정·부총학생회장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고 이에 의한다.

3. 임원의 자격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력이 있는 자

나. 재학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재학생 3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4. 탄핵

가. 탄핵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2)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발의한다.

나.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 탄핵에 대한 발의가 있을 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2) 탄핵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탄핵대상 임원의 자기변호를 포함 찬반토론을 실시한다.

다. 의결 -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교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회장·부회장) 학생총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전 회원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총학생회장 및 회장으로 한다.

제 10 조 (권한)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의 제정 및 전면 개정
2. 학생활동에 관한 중요사안 토의 및 의결
3. 총학생회장단 불신임 의결

제 11 조 (회의 및 소집)

1.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 학년초에 개최하되 10일 전에 공고하고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의결 및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4. 총학생회의 안건 및 개최일시와 장소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 12 조 (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 13 조 (구성) 대의원회는 본회의 심의·의결 및 집행 기구로서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대의원)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각 학급의 정·부반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학교내 각종 준거집단의 집약된 의견을 학생회 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특별활동 부서의 반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또 학교에 신고되고, 자주적,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학급간, 학년간에 10



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각 특별활동 부서의 반장과 동아리 대표는 특별활동 부서 또는 동아리의 실정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투표로 선출한다.

제 15 조 (활동)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전달
2. 학생의 복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
3. 바람직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자율 선도 활동
4. 학예, 체육, 학교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지원
5. 본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홍보 출판
6.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7.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제 16 조 (회의 및 소집) 회의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정례 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 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대의원1/3이 요구한 경우 소집한다.

제 17 조 (부서) 대의원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는 1인의 부서장을 선출하고, 잔여 대의원들을 부원으로 한다.

1. 총무부- 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 및 각종 서무, 회계,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생생활부 - 회원들의 건전한 학풍 조성과 자율적 기강확립에 노력한다.
3. 체육문화부- 학예, 체육대회, 각종 문화공연 등 학교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한다.
4. 복지환경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및 불우회원 돕기 등의 활동을 한다.
5. 홍보출판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관심을 고취한다.
6. 기타 - 필요시 새로운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18 조 (구성) 총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회의) 정례 회의는 월 1회 (매월 둘째 주)로 하고 총학생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신속히 집행하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제반 사업계획을 세우며, 대의원회 소집, 의안 상정 등의 활동을 한다.

제 5 장 학 급 회

제 21 조 (회원) 학급의 전체 학생이 학급회 회원이 된다.

제 22 조 (회의) 정기 회의는 격주 1회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임시 회의는 학급제적 1/3의 발의나, 반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임원) 학급회의 임원은 정·부반장과, 회계 서기, 각 부서장(두레별 조직인 경우 각 두레장), 대의원으로 한다. 회계, 서기, 각 부서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24 조 (부서) 총무부, 생활부, 환경부, 체육문화부, 홍보부, 학습부, 기타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학급조직을 두레별 조직으로 하는 경우 학생들이 자주적 활동을 하는 학습두레 또는 취미활동 두레 등으로 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 25 조 (정·부반장의 선출) 정·부반장은 학급회의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반장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위 득표자를 부반장으로 하고, 학급 실정에 따라 별도의 투표를 통해 부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 26 조 (정·부반장의 자격) 정·부반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력이 있는 자
2. 재학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경우 교무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 27 조 (업무) 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급 내에서 결정한 주제에 대한 토의 및 실천계획 수립
2.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발의
3. 대의원회에서 공고한 안전토의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28 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학교실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 중에서 6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장, 교감, 학생부장, 학생회 지도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2인은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29 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자문
2. 학생총회, 대의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기타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자문

제 7 장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는 다음 각항의 경우에 의한다.

1. 일부 개정 - 일부개정은 제적대의원 1/3 이상, 총학생회장이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 전면 개정 - 제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학생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칙 □

제 1조 본 회칙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정 · 부총학생회장 선거관리 업무 시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목천중학교 정·부총학생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맡는다.

1.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각 학년 3명 이상이 포함된 10명 이내로 한다.
2. 업무 및 권한 - 선거에 대한 제반 업무(각 후보들의 선거운동 감시, 합동유세, 투표장 배치 및 투·개표 활동 등)를 수행한다.
3. 개회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5 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단, 필요시 선거인 명부를 학급 명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후보자)

1. 총학생회장 후보 3학년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2학년 1인을 후보 회장단으로 하는 런닝메이트제로 한다. (단, 남·녀 제한 없음)
2.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4.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 7 조 (기호배정)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에 입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배정한다.

제 8 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당해 후보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벽보의 침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제 3 항의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을 기재하고 공약, 선거 구호 등을 추가할 수 있다.
5. 선거 벽보는 동일 장소에 동시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부착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합동유세를 1회 실시한다, 유세 연설은 10분 이내로 한다.
7. 모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학급별 순회연설을 할 수 있다.

제 9 조 (투표)

1. 투표는 무기명 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투표 개시 한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에 필요한 장소 등을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5.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2인씩의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6.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 10 조 (개표)

1. 개표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 때의 참관인은 개표 때의 참관인을 겸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참관인 임석하에 지명한 선거관리위원 2명이 실시하고 집계는 별도 지정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득표수의 공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표한다. 이때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수, 기권표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다.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라.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 마.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바.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제 11 조 (당선)

1. 당선자는 총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하되,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이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선거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즉시 당선자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12 조 (당선 무효)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선은 무효로 한다.
 - 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 나. 당선을 위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을 때



-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당선 무효는 당선자의 공고로부터 1일 이내에 후보의 이의제기 또는 선거권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 3. 당선 무효는 선거관리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과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 13 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학생회 내에 선거관리 업무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본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칙 □

제 1 조 본 규칙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일반원칙에 따르며, 모든 유권해석은 자문위원에 의뢰한다.
 제 2 조 본 규칙은 1999학년도 선거부터 효력을 갖는다.

[서식 1]

투표자 명부

계 학년 반

| 번호 | 성명 | 투표용지 수령인 | 번호 | 성명 | 투표용지 수령인 | 번호 | 성명 | 투표용지 수령인 |
|----|----|-------------|----|----|-------------|----|----|-------------|
| 1 | | | 19 | | | 37 | | |
| 2 | | | 20 | | | 38 | | |
| 3 | | | 21 | | | 39 | | |
| 4 | | | 22 | | | 40 | | |
| 5 | | | 23 | | | 41 | | |
| 6 | | | 24 | | | 42 | | |
| 7 | | | 25 | | | 43 | | |
| 8 | | | 26 | | | 44 | | |
| 9 | | | 27 | | | 45 | | |
| 10 | | | 28 | | | 46 | | |
| 11 | | | 29 | | | 47 | | |
| 12 | | | 30 | | | 48 | | |
| 13 | | | 31 | | | 49 | | |
| 14 | | | 32 | | | 50 | | |
| 15 | | | 33 | | | 51 | | |
| 16 | | | 34 | | | 52 | | |
| 17 | | | 35 | | | 53 | | |
| 18 | | | 36 | | | 54 | | |



[서식 2]

후 보 등 록 신 청 서

목천중학교 학년 반

성명 :

상기 본인은 금번 _____ 일에 실시되는 _____ 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선거의 _____ 후보로 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

록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원인 (인)

목천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3]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가. 회 장 후보 : 제 학년 반 성명

나. 부회장 후보 : 제 학년 반 성명

위의 사람을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년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번호 | 학년반 | 성명 | 서명 | 번호 | 학년반 | 성명 | 서명 | 번호 | 학년반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천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4]

후보자 등록 공고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목천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인)

| 회장 후보자 | | | 부회장 후보자 | |
|--------|------------|-----|------------|-----|
| 기 호 | 후보자 성 명 | 학년반 | 후보자 성 명 | 학년반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서식 5]

학생회정·부회장후보자 사퇴신고서

학년 반 성명

상기 본인은 금번 일 실시되는 학생회정·부회장 선거의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후보자) (인)

목천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 6]

후보자(등록 무효) · (사퇴) 공고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년도 (제 학기)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 무효)(사퇴)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목천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인)

| 구 분 | 기 호 | 후보자 성명 | (등록 무효) (사퇴) 사유 | (등록 무효) (사퇴)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등록 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7]

당선인 공고

19 년 월 일 실시한 19 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 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목천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인)

| 구 분 | 학 년 반 | 성 명 | 비 고 |
|-------|-------|-----|-----|
| 회 장 | | | |
| 부 회 장 | | | |